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72회 제2차 정례회 (2024. 11. 27.)

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#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## 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권 하 나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4-156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4년 11월 15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8일(월)

### 2. 제출사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출연대상: (재)마포문화재단
- 나. 출연의 필요성
  -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
  - 마포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
- 다. 출연금 결정: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 후 2025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

#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## 5. 검토보고

- 본 동의안은 2025년도 (재)마포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(出捐)에 대하여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<sup>1)</sup>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.
- 출연대상인 (재)마포문화재단은 2007년 마포구의 출연을 받아 설립되었으며,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, 전시, 축제 사업, 문화돌봄 예술치유 사업, 구민 문화예술교육, 생활체육 진흥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.
- 출연목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개발·시행,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여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함.
-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, 본 동의안은 출연의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, 마포문화재단의 운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마포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은 출자·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,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·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·낭비성 출자·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.
- 또한,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·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---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따라서, 이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계획에 제출된 출연금(5,769,051천 원)은 별도의 예산안 심의 시 문화재단의 그간의 운영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는 후 확정됨.

**<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>**

-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**■ 지방재정법**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**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**제20조(재정 지원)**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**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**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2.12.31.>
- 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**제11조(운영재원 등)**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